

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강압조사 진정민원 관련 조사결과 보고

□ 민원개요

- '17.12.15.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(이하 진흥원) 출판물불법유통신고 센터의 간행물 유통질서 확인반원(이하 확인반원) 상근직 2명(□□□, □□□)과 모니터링 요원 2명(□□□, □□□ 이상 비상근 일용직)이 민원인(□□□)의 사재기 정황*을 발견하여 사실 확인 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나, 민원인은 해당 현장조사가 위압적, 인권을 침해한 조사였다고 진정 제기

<민원인이 주장한 위법·부당한 조사내역>

- ① 인권 무시한 채 조사 진행 : ▲관절염 등으로 불편한 민원인, ▲12월 경 추운 날씨에 건물 외부에서, ▲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상황에서, ▲위압적인 태도로, ▲5명이 둘러싸고 장시간 조사
- ② 신분증 미 제시 : 조사자 총 5명 중 3명이 간행물 유통질서 확인 반원증 미 제시
- ③ 처분결과 미 통보 : 장기간 결과통보가 없어 2.20. 처분 결과에 대해 전화 문의를 하니, 12월 경 내부종결로 끝났으며 민원인에게 '계도' 처분을 하였다고 그제야 답변

□ 조사결과

- ① (인권침해 관련) 민원인의 주장대로 영하의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20여 분간* 건물 외부에서 사재기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한 사실 확인

* 조사일('17.12.15.) 서울 평균 기온은 영하 0.3도, 확인된 조사 시간은 16:53분 ~ 17시16분으로 약 20분간 진행됨

- ☞ 인권침해 고려, 경찰관 1명의 입회하에 확인반원 2명이 조사를 진행하였고, 조사자는 총 3명인 점, 또한 교보문고 보안팀의 요청에 따라 건물 외부에서 조사를 진행한 사실 등은 확인하였으나, 단순 정황만으로 ▲영하의 날씨에, ▲고령(62세 여성)으로 관절염을 앓고 있는 민원인을, ▲건물 외부에서 20여 분간 서서 위압적으로 조사한 행위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

※ 진흥원은 사재기 등 현장조사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, 사전 조사교육 없이 확인반원을 조사에 투입하였으며, 특히 현장조사담당자인 □□□ 등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을 숙지하지 못한 채 조사를 진행함

② (신분증 미 제시 관련) 조사원 총 4명 중 모니터링 요원 2명이 간행물 유통질서 확인 반원증을 소지하지 않음 확인

☞ 조사원(2명)이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5호에 따른 확인 반원증을 소지하지도 않고 간행물 유통질서 현장조사를 한 것은, 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11조 제3항* 위반

*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보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, 이는 비상근직이라도 예외가 아님**

** 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2조 제3호: 조사원은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·직원 또는 개인을 말한다.

③ (처분결과 미 통보 관련) 진흥원이 처분 결과(18.1.25.)를 민원인에게 별도 통지하지 않았음을 확인

☞ 행정조사의 결과는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분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민원인에게 처분할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24조 위반

□ 조치계획

○ 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▲현장조사원에게 확인 반원증 미발급(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11조 제3항 위반), ▲사재기 등 현장조사 관련 매뉴얼, 절차, 지침 등을 갖추지 않은 채 조사원에게 실적을 올릴 것만 요구하는 등 행정조사 업무를 태만하게 관리 ▲행정조사 처분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등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(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24조 위반)됨

○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에게 ‘기관주의’ 조치하고 향후 관련 법규에 맞게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방안을 강구토록 ‘통보’ 조치

○ 조사자 □□□, □□□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토록 ‘주의’ 요구